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5. 21 선고 2018가단233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19. 4. 23

판결 선고 2019.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등기소 2015. 3.27. 접수 제158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2. 12. 변제를 원인으로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12. 피고(변경 전 상호 : C,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물품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경상남도 진주시 D 대 1774.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원고,채권최고액은 20,000,000원으로 하여 창 원지방법원 진주등기소 2015. 3. 27. 접수 제1589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원고는 2015. 3. 27.부터 물품공급이 종료된 2015. 12. 12.까지 계속적으로 물품을공급받았고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등기소 2015 . 3. 27. 접수 제158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2.12.자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전선주

별지